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

#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 검 토 보 고

〈탄소세배당 제도 도입〉

■ 용혜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860호)

2024.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주아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                      | 1  |
| III . 주요내용 .....                     | 2  |
| IV . 참고사항 .....                      | 3  |
| V . 검토의견 .....                       | 4  |
| 1. 제정안의 주요내용 .....                   | 4  |
| 2. 법 제정 필요성 검토 .....                 | 6  |
| 3. 조문별 검토 .....                      | 13 |
| 가. 총칙(안 제1장) .....                   | 13 |
| 나. 탄소세배당의 신청 및 지급(안 제2장) .....       | 16 |
| 다. 수급자의 사후관리(안 제3장) .....            | 24 |
| 라. 탄소세배당특별회계(안 제4장) 및 부칙 안 제2조 ..... | 29 |
| 마. 보칙·별칙(안 제5장·제6장) 및 부칙 안 제1조 ..... | 32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용혜인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4. 9. 10.

다. 회 부 일 : 2024. 9. 11.

## II. 제안이유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기후위기 및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조치의무를 명문화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에는 이를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였음. 두 법률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0년 6억 5,600만톤에서 2018년 7억2,700만톤, 2021년 6억 7,660만톤으로 지난 15년간 오히려 증가세를 보임.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환경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강화하여야 함.

또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 효과적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함과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하면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갈 제도적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함.

이에 탄소세의 수입을 전액 대한민국 국민·결혼이민자·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탄소세배당을 탄소세와 함께 도입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조세의 공정성을 실현하며 국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Ⅲ.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 배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1조).

나. 탄소세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탄소세배당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않음(안 제3조 및 제4조).

다. 탄소세배당은 「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 세입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기획재

정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 연 2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탄소세배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급권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등에는 탄소세배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기획재정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세배당을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환수하도록 함(안 제12조).

사. 탄소세배당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기획재정부장관은 탄소세배당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탄소세배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안 제19조).

#### IV.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의안번호 제3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V. 검토의견

### 1. 제정안의 주요 내용

제정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세법안」<sup>1)</sup>에 따라 ‘탄소세(carbon tax)’를 신설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보완하기 위해, 탄소세의 세입을 국민 및 실거주민(결혼이민자 및 영주 외국인) 전체를 대상으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탄소세배당(carbon dividends)’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전체 6개의 장과 22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 ]

| 구 분                         | 내 용                                                                                                                                                              |
|-----------------------------|------------------------------------------------------------------------------------------------------------------------------------------------------------------|
| <b>제1장 총 칙</b>              |                                                                                                                                                                  |
| ○ 목 적(안 제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 형평성과 탄소세의 탄력적 운용 도모</li> <li>- 탄소세배당의 수급 및 탄소세배당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li> </ul> |
| ○ 정 의(안 제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세배당: 이 법에 따라 국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금전</li> </ul>                                                                  |
| ○ 수급권 보호 등<br>(안 제3조 및 제4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세배당 수급권은 양도·담보제공·압류 불가</li> <li>- 탄소세배당 수급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면제 및 기초생활 수급 산정을 위한 실제소득에 미포함</li> </ul>                      |
| <b>제2장 탄소세배당의 신청 및 지급</b>   |                                                                                                                                                                  |
| ○ 탄소세배당 지급대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 외국인</li> </ul>                                                                                |

1) 본 제정안은 기획재정부위원회에 회부된 「탄소세법안」(의안번호 제22038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함.

| 구 분                                          | 내 용                                                                                                                                                           |
|----------------------------------------------|---------------------------------------------------------------------------------------------------------------------------------------------------------------|
| 지급액 및 지급신청<br>(안 제5조 및 제7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액: 탄소세 세입 전액을 수급권자 수로 나눈 금액</li> <li>- 지급신청: 수급권자·대리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청</li> </ul>                              |
| ○ 관련 정보의 제공<br>및 조사·질문 등<br>(안 제6조 및 제8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부장관은 수급권자에게 탄소세배당 관련 정보 제공</li> <li>- 기재부장관은 지급 신청자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가능</li> </ul> |
| <b>제3장 수급자의 사후관리</b>                         |                                                                                                                                                               |
| ○ 탄소세배당 지급<br>정지 및 수급권 상실<br>(안 제10조 및 제1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의 교정시설 수용, 행방불명·실종 등 사망추정, 60일 이상 국외 체류 등 경우 탄소세배당 지급 정지</li> <li>- 수급권자 사망·국적상실 등의 경우 수급권 상실</li> </ul>          |
| ○ 탄소세배당 환수<br>(안 제1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급 시 탄소세배당 환수</li> </ul>                                                                                  |
| <b>제4장 탄소세배당특별회계</b>                         |                                                                                                                                                               |
| ○ 특별회계의 운용·<br>관리(안 제13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li> </ul>                                                                                            |
| ○ 세입 및 세출 등<br>(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 세입을 전부 특별회계로 전입) 및 그 밖의 수입금</li> <li>- 세출: 탄소세배당의 지급으로 인한 지출</li> </ul>              |
| <b>제5장 보칙 및 제6장 벌칙</b>                       |                                                                                                                                                               |
| ○ 보 칙<br>(안 제19조 및 제20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세배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 권한 등의 위임·위탁</li> </ul>                                                                  |
| ○ 벌 칙<br>(안 제21조 및 제2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 수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li> <li>-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등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li> </ul>                                    |
| <b>부칙</b>                                    |                                                                                                                                                               |
| ○ 시행일<br>(부칙 안 제1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li> </ul>                                                                                           |
| ○ 다른 법률의 개정<br>(부칙 안 제2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재정법」 별표 1(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에 동 법 추가</li> </ul>                                                                         |

## 2. 법 제정 필요성 검토

「탄소세법안」은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를 신설하려는 것임. 탄소세의 과세대상은 에너지자원·제조업원재료·운송수단연료 등에 사용되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휘발유·석유가스·석탄 등의 물품이며,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거나 수입하는 자임. 세율은 1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sub>2</sub> eq) 당 8만원이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음.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억제하기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 논의되고 있음. 탄소세는 1990년에 핀란드가 최초로 도입하였으며, 2023년 3월 기준으로 전세계 27개국에서 탄소세를 시행 중임.

### [탄소세 도입 국가 현황]

(2023년 3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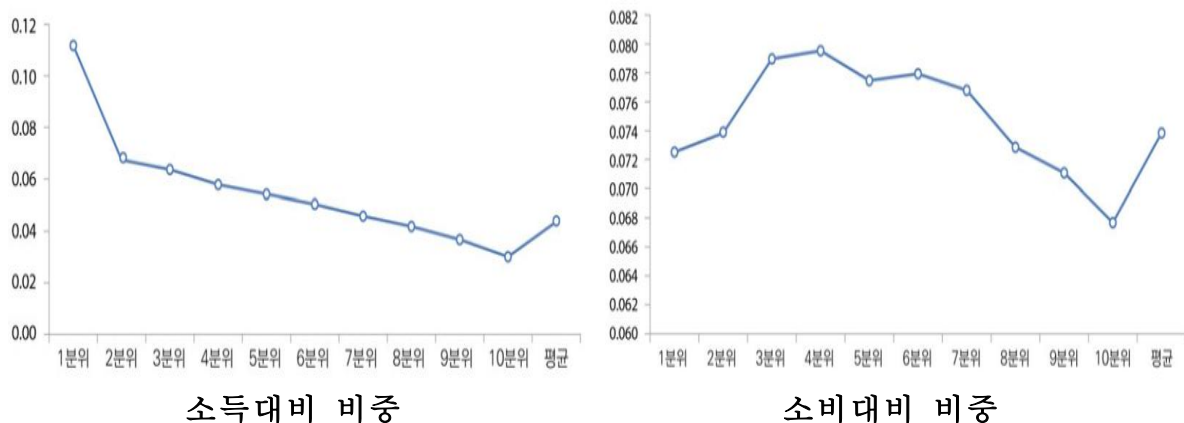
| 유럽<br>(18개국)                                                                                                           | 아메리카<br>(6개국)                             | 아시아<br>(2개국) | 아프리카<br>(1개국) |
|------------------------------------------------------------------------------------------------------------------------|-------------------------------------------|--------------|---------------|
|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br>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br>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네덜란드,<br>룩셈부르크, 노르웨이, 폴란드,<br>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br>영국, 스위스, 우크라이나 | 아르헨티나, 칠레,<br>콜롬비아, 우루과이,<br>멕시코, 캐나다(일부) | 싱가포르,<br>일본  | 남아프리카<br>공화국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2024. 5. 30.)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례한 종량세 부과를 통해 이산화탄소 등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다만, 탄소세는 간접세의 성격을 가지므로, 탄소세 부과에 따라 에너지 가격 등이 인상되면 경제적 취약계층이 더 큰 부담을 지게 되어 조세의 역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 탄소세 도입에 따른 가계 세부담의 소득·소비대비 비중 ]

(단위: %)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2019. 11)

국회예산정책처는 탄소세가 도입될 경우 소득·소비가 높을수록 세부담이 적고 소득·소비가 낮을수록 세부담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였음.<sup>2)</sup> 이러한 역진성은 조세의 공평부담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등의 조세 저항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탄소세 도입의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2) 국회예산정책처, “에너지세제 현황과 쟁점별 효과 분석”, 2019. 11. p.131-p.135

이에 제정안은 탄소세 세입을 모든 국민과 영주 외국인 등에게 균등하게 배당함으로써 탄소세의 역진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첫째, 탄소세의 세입 전액을 전 국민에게 균등 분배하여 역진성을 완화한다면, 탄소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저탄소 소비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화석연료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한 세금을 모두에게 균등하게 분배할 경우, 대부분의 국민은 납부하는 세금에 비해 지급받는 배당액이 더 클 것이라는 의견이 있음.<sup>3)</sup> 이를 통해 탄소세 도입에 대한 정책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입 이후에도 탄소세를 인상 등에 대한 저항성을 줄임으로써 탄소세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소득수준 등을 불문하고 탄소세배당을 모두에게 균등 지급하게 되면 선별적 복지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완화할

---

3) 4명의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전 위원장, 27명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15명의 미 경제자문회의 전 의장 및 2명의 미 재무부 전 장관은 2019년 1월 미 월스트리트저널을 통해 “탄소배당에 관한 경제학자 성명(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을 발표하여 미국의 탄소세 및 탄소배당 도입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음.

주요 내용은 탄소세 세입을 전 국민에게 균등하게 일괄 지급함으로써 정책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 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최하위 소득 계층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은 납부하는 탄소세에 비해 더 큰 배당을 받아 재정적인 이점을 얻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음.

[Economists’ Statement on Carbon Dividends(The Wall Street Journal, 2019. 1.)] I ~ IV(생략)  
V. To maximize the fairness and political viability of a rising carbon tax, all the revenue should be returned directly to U.S. citizens through equal lump-sum rebates. The majority of American families, including the most vulnerable, will benefit financially by receiving more in “carbon dividends” than they pay in increased energy prices.

수 있고, 전 계층의 소비 여력 증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 등의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선별 지급을 위한 과도한 행정비용 발생이나 공정성 시비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장점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임.

참고로, 탄소세배당을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로는 스위스의 ‘생태배당’ 제도를 들 수 있음. 스위스의 「환경보호법」은 환경 부담금 수입을 국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탄소세 수입의 2/3를 스위스 거주자에게 균등 배분하고 있음.<sup>4)</sup>

반면, 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에 대한 고려도 필요해 보임.

첫째,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여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탄소세의 목적을 고려하면, 탄소세의 세수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시행에 사용하는 것이 제도 목적에 더욱 부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탄소세 세수를 정액배분하는 것은 소득 증가에 따른 에너지재 소비를 야기하여 정액배분이 없는 경우에 비하여 탄소배출량 절감효과가 감소한다는 의견도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sup>5)</sup>

---

4) 조혜경, 「탄소배당 연계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및 기본방향」, 2020. 11. 10.

5) 이재원·김우현, 「탄소세가 가계의 소득분배와 탄소 배출에 미치는 영향: QUAIDS 모형을 사용하여」, 에너지경제연구 제21권 제2호, 에너지경제연구원·한국자원경제학회, 2022. 9.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는 해외국가의 경우에도 탄소세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후·환경 개선 사업에 사용하는 국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임.

[ 탄소세 도입 국가별 세수 사용처 ]

| 국가명       | 사용처                           | 국가명       | 사용처                                 |
|-----------|-------------------------------|-----------|-------------------------------------|
| 남아프리카 공화국 | 세금 감면 / 에너지 및 대중교통개선 사업       | 멕시코       | 일반예산                                |
| 스위스       | 거주자 배당 / 건물 에너지 효율 사업         | 스웨덴       | 일반예산                                |
| 아르헨티나     | 인프라투자 등 개발사업 / 사회보장사업 / 일반예산  | 아일랜드      | 일반예산 / 환경 개선 사업 / 부가세 환급, 저소득층 지원 등 |
| 영국        | 일반예산                          | 우크라이나     | 일반예산                                |
| 일본        | 저탄소 기술, 재생 에너지 등 지원           | 캐나다 (BC주) | 저·중소득층 세금 감면 / 기후·환경 개선 관련 사업       |
| 콜롬비아      | 기후·환경 개선 관련 사업 / 불법작물대체 사업 지원 | 프랑스       | 일반예산                                |

※ 자료: I4CE - Institute for Climate Economics, 「Maximising benefits of carbon pricing through carbon revenue use: A review of international experiences」, 2024. 5.

또한,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과하고 있는 국세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역시 모두 각각의 과세 목적과 연계된 기금, 특별회계 및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6)</sup>

따라서 탄소세의 경우에도 과세 목적에 맞도록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저탄소 전환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였는데, 탄소세의 과세 목적을 고려할 때 해당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음.<sup>7)</sup>

둘째, 탄소세 도입에 따른 역진성 문제는 탄소세배당의 균등 지급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별적·우선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조세의 역진성은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하므로, 고소득층을 제외하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것이 역진성 완화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6) <목적세의 부과목적 및 배분>

| 구분         | 부과목적                          | 배분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교통시설 확충, 에너지 관련 사업, 환경보전 및 개선 |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기후대응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
| 교육세        | 교육 기반 확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고등·평생교육특별지원회계   |
|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조세」(2024. 5.) 재정리

7)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이 유일하며, 전체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1%임.(2023회계연도 결산 기준)

라고 할 수 있을 것임.<sup>8)</sup>

한편, 기획재정부는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과 관련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으로, 탄소세 수입을 화석연료 사용량이 많은 발전사·기업 등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투자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또한, 전 국민에 대한 균등배당은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반면, 소득 보장 효과가 불분명하며, 탄소세의 역진성 고려 시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임.

종합하면, 제정안의 입법 여부는 「탄소세법안」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탄소세로 마련한 재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탄소세의 목적상 가장 효과적인지, 탄소세의 세입을 모두에게 균등 분배하는 것이 탄소세의 역진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등을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8)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은 물가상승 등 부작용으로 이어져 오히려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리게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음.

## 2. 조문별 검토

### 가. 총칙(안 제1장)

| 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목 적(안 제1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국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 형평성과 탄소세의 탄력적 운용 도모</li><li>- 탄소세배당의 수급 및 탄소세배당특별회계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li></ul></li><li>○ 정 의(안 제2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탄소세배당: 이 법에 따라 국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금전</li></ul></li><li>○ 수급권 보호 및 특례(안 제3조 및 제4조)<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탄소세배당 수급권은 양도·담보제공·압류 불가</li><li>- 탄소세배당 수급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면제 및 기초생활 수급 산정을 위한 실제소득에 미포함</li></ul></li></ul> |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탄소세배당의 수급 및 탄소세배당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과 탄소세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탄소세 신설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역진성을 탄소세배당을 통해 완화함으로써 조세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는 것은 이 법의 목적으로 적절하다고 보여짐.

다만,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탄소세)으로 특정한 세출(탄소세배당)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특별회계 설치를 통해 탄소세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탄소세의 탄력적 운용’을 이 법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

당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봄.

안 제2조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탄소세배당’, ‘수급권’, ‘수급권자’ 및 ‘수급자’를 정의하고 있음.

이 중 ‘탄소세배당’의 정의를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탄소세 세입을 국민 등에게 지급한다는 ‘탄소세배당’의 뜻을 충분하게 정의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이 법에 따라’ 부분을 ‘「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여’ 등으로 수정하여 탄소세배당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3조 및 제4조는 탄소세배당 수급권의 양도·담보제공 및 압류를 금지하고, 탄소세배당은 국세·지방세 부과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을 위한 소득 인정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이는 모두에게 균등하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하여 탄소세의 역진성을 완화한다는 제도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짐.

## ※ 제정안 원문

| 제 정 안                                                                                                                                                                                                                                                                                                                                                                                                                                                                                                                                                                                                                                                                                                                                       |
|---------------------------------------------------------------------------------------------------------------------------------------------------------------------------------------------------------------------------------------------------------------------------------------------------------------------------------------------------------------------------------------------------------------------------------------------------------------------------------------------------------------------------------------------------------------------------------------------------------------------------------------------------------------------------------------------------------------------------------------------|
| <p>제1장 총칙</p> <p><b>제1조(목적)</b>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을 지급하여 조세 부담의 형평과 탄소세의 탄력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탄소세배당의 수급 및 탄소세배당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탄소세배당”이란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li> <li>2. “수급권”이란 탄소세배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li> <li>3. “수급권자”란 탄소세배당 수급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li> <li>4. “수급자”란 이 법에 따라 배분된 탄소세배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li> </ol> <p><b>제3조(탄소세배당 수급권의 보호)</b> 탄소세배당 수급권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압류 대상으로 할 수 없다.</p> <p><b>제4조(탄소세배당 수급에 관한 특례)</b> ① 이 법에 따른 탄소세배당 수급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② 이 법에 따른 탄소세배당 수급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제1항의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p> |

## 나. 탄소세배당의 신청 및 지급(안 제2장)

| 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세배당 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신청(안 제5조 및 제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급대상: 대한민국 국민, 결혼이민자 및 영주 외국인</li> <li>- 지급액: 탄소세 세입 전액을 수급권자 수로 나눈 금액</li> <li>- 지급신청: 수급권자·대리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신청</li> </ul> </li> <li>○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조사·질문 등(안 제6조 및 제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재부장관은 수급권자에게 탄소세배당 관련 정보 제공</li> <li>-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 요청 가능</li> <li>- 기재부장관은 지급 신청자 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 가능</li> </ul> </li> <li>○ 미지급 탄소세배당의 청구(안 제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탄소세배당이 있는 경우 지급 청구 가능</li> </ul> </li> </ul> |

안 제2장은 탄소세배당의 지급대상·지급액 및 지급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먼저 안 제5조제1항은 탄소세배당의 지급대상을 i) 대한민국 국민, ii)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결혼이민자 및 iii)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하고 있음.<sup>9)</sup>

9) 안 제5조(탄소세배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탄소세배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6조의 주민에 해당하는 자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실거주민”이라 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제정안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자에게도 탄소세배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간접세에 해당하는 탄소세는 국내에 거주하며 생산·소비 활동을 하는 결혼이민자나 영주 외국인도 모두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에 대해서도 탄소세배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도 수급권을 인정하고 있음.<sup>10)</sup>

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은 탄소세배당의 지급액은 탄소세 세입의 전부를 탄소세배당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sup>11)</sup>으로 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연 2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안 제5조에서 탄소세배당의 지급대상과 지급액·지급 방법에 관한 내용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조문을 분리하는 등 일부 체계·자구를 정비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 재산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11) 지난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된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안」(제2108733호)에 대한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에 따르면 평균 연 46조원 정도의 세수가 예상되므로, 지급 대상을 5천만명으로 가정할 경우 평균적으로 1인당 연간 92만원 정도를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연 세수를 약 30조로 가정할 경우 연 60만원, 약 60조로 가정할 경우 연 120만원을 지급할 수 있음.

안 제6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및 실거주민(결혼 이민자 및 영주 외국인)에게 탄소세배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탄소세배당 수급권자가 지급 신청의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으로서 타당성이 있음.

안 제6조제2항에서는 탄소세배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탄소세배당 지급대상자에 관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요청 가능한 자료·정보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 유사 입법례<sup>12)</sup>와 달리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음.

탄소세배당 수급권자에 관한 자료 및 정보는 필요 최소한으로 제공·활용되어야 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유사 입법례를 참조하여 그 범위를 안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4호<sup>13)</sup> 등으로 한정할

12) 「아동수당법」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7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세 미만 아동과 그 보호자에 대한 제7조제2항제2호 및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3) 안 제8조(조사 등)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탄소세배당지급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필요가 있다고 봄.

안 제7조에서는 수급권자 또는 대리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탄소세배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정안에는 그에 따른 ‘지급결정’에 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sup>14)</sup>를 참조하여 조문 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8조제1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탄소세배당 지급 신청자에게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탄소세배당 지급 신청자에 관한 각종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

---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탄소세배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14) 「아동수당법」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하여 평가한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재산 수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이 법에 따른 지급 대상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하여 관련 조사의 일부를 생략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탄소세배당의 지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수감 중이거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등의 경우에는 탄소세배당의 지급이 정지되고(안 제10조), 사망·국적상실 등의 경우에는 수급권이 상실되므로(안 제11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 규정을 두는 것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봄.

다만, 안 제8조는 자료제출 요구에 관한 내용 외에 조사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에도 조 제목이 ‘조사 등’으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자료제출 요구 등’으로 수정하고, 조사를 실시할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을 따르도록 하는 안 제8조제4항의 문구를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안 제9조는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탄소세배당이 있는 경우에 수급자는 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미지급 탄소세배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9조를 현재의 법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이미 탄소세배당 지급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안 제7조와 중복되어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보임.

다만, 미지급금 관련 규정은 유사 입법례<sup>15)</sup>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

15) 「기초연금법」 제15조(미지급 기초연금) ①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초연금 수급자의 사망 당시 생

수급권자가 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 유족 등이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규정으로 보임.

따라서 안 제9조에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를 추가하고, 수급자가 아닌 유족 등이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수급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므로 조문 전체를 안 제3장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계를 같이 한 부양의무자(배우자와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는 미지급 기초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부양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기초연금의 청구 절차·방법 및 부양의무자의 인정기준과 지급순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동수당법」 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 ①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정안 원문

| 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탄소세배당의 신청 및 지급</p> <p><b>제5조(탄소세배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b> ① 탄소세배당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한민국 국민</li> <li>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지방자치법」 제16조의 주민에 해당하는 자 및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의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이하 “실거주민”이라 한다)</li> </ol> <p>② 탄소세배당액은 「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 세입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탄소세배당 수급권자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p> <p>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탄소세배당 수급권자의 수를 확정하여야 한다.</p> <p>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탄소세배당을 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탄소세배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6조(탄소세배당 관련 정보의 제공)</b>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한민국 국민 및 실거주민에게 탄소세배당 지급의 대상·금액 및 신청방법 등 탄소세배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p> <p>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탄소세배당 관련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한민국 국민 및 실거주민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p> <p>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방법·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b>제7조(탄소세배당의 지급 신청)</b> ① 수급권자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탄소세배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탄소세배당 지급 신청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제 정 안

**제8조(조사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탄소세배당 지급을 신청한 수급권자(이하 “탄소세배당지급신청자”라 한다)에게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권의 발생·변경 등의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탄소세배당지급신청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자료 및 국민·외국인의 출입국 자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에 관한 자료,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 자료,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신고 자료, 해외이주포기신고 자료 및 영주귀국신고 자료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3. 매장, 화장 및 장례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4.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5.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또는 탄소세배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범위·시기·내용·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미지급 탄소세배당의 청구)** ① 수급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탄소세배당이 있는 경우에 수급자는 미지급 탄소세배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지급 탄소세배당의 청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수급자의 사후관리(안 제3장)

| 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세배당 지급 정지 및 수급권 상실(안 제10조 및 제1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급자의 교정시설 수용, 행방불명·실종 등 사망추정, 60일 이상 국외 체류 등 경우 탄소세배당 지급 정지</li> <li>- 수급권자 사망·국적상실 등의 경우 수급권 상실</li> </ul> </li> <li>○ 탄소세배당 환수(안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급 시 탄소세배당 환수</li> </ul> </li> </ul> |

안 제10조는 수급자가 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거나 ii)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또는 iii)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해까지 탄소세배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안 제11조는 i) 사망한 경우, ii) 국적을 상실한 경우, iii)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세배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탄소세배당 수급권이 상실됨을 규정하고 있음.

당초 탄소세배당 수급권이 있었던 자라고 하더라도 사후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면 탄소세배당 수급권이 소멸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영주 외국인의 경우에도 사후적으로 영주 자격 등을 상실한 때에는 수급권이 소멸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추가하는 방안과 국적은 상실하였어도 결혼이민자나 영주 외국인의 자격이 유지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급권을 상실시키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11조제3호는 그 밖의 탄소세배당 수급권 상실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급권 상실 사유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유사 입법례<sup>16)</sup>에 따르면 수당 등의 지급 정지 또는 지급권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일정 기간 내에 지급권자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바, 탄소세배당의 경우에도 그러한 취지의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16) 「기초연금법」

**제18조(신고)** ① 기초연금 수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제17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정지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
2. 제17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 상실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4. 기초연금 수급자가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으로, 안 제12조는 탄소세배당의 환수에 관한 내용으로서, i)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세 배당을 받았거나 ii) 지급 정지기간 중 지급 등 탄소세배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이 경미하거나 환수 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를 환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17)에 따르면 환수금이 발생한 경우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를 향후 지급할 금액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바, 탄소세배당의 경우에도 이를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

17) 「기초연금법」 제19조(기초연금액의 환수)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기초연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의 환수 대상자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액이 있는 경우 그 지급할 기초연금액을 환수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 ※ 제정안 원문

| 제 정 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제3장 수급자의 사후관리</p> <p><b>제10조(탄소세배당의 지급 정지)</b>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해까지는 탄소세배당의 지급을 정지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li> <li>2.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li> <li>3. 수급자의 국외 체류기간이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국외 체류 60일이 되는 날을 지급 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본다.</li> <li>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li> </ol> <p>②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p> <p><b>제11조(탄소세배당 수급권의 상실)</b>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 탄소세배당 수급권을 상실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망한 경우</li> <li>2. 국적을 상실한 경우</li> <li>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세배당 수급권의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li> </ol> <p><b>제12조(탄소세배당의 환수)</b>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탄소세배당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탄소세배당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세배당을 받은 경우</li> <li>2. 제10조에 따라 탄소세배당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 탄소세배당이 지급된 경우 등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li> </ol> |

### 제 정 안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2.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탄소세배당특별회계(안 제4장) 및 부칙 안 제2조

| 제 정 안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회계의 운용·관리(안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li> </ul> </li> <li>○ 세입 및 세출 등(안 제14조 및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입: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탄소세 세입) 및 그 밖의 수입금</li> <li>- 세출: 탄소세배당의 지급으로 인한 지출</li> </ul> </li> <li>○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안 제1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 세입을 전부 특별회계로 전입</li> </ul> </li> <li>○ 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안 제17조 및 제1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출예산 이월 허용 및 결산상 잉여금 다음 회계연도 세입 처리</li> </ul> </li> <li>○ 부 칙(안 제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법개정: 「국가재정법」 별표 1(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에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 신설</li> </ul> </li> </ul> |

안 제4장은 탄소세배당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내용으로, 특별회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하며, 세입은 일반회계로부터 탄소세 세입 전부를 전입한 것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세출은 탄소세 배당의 지급으로 인한 지출로 하고 있음.

「탄소세법안」에 따라 탄소세를 신설하고 그 세입 전액을 모두 균등 지급하는 탄소세배당 제도를 도입한다면, 탄소세의 수입과 탄소세 배당의 지출을 독립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한 탄소세배당특별회계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다만, 다른 특별회계 설치 법률<sup>18)</sup>의 경우 회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

18) 「등기특별회계법」 제3조(세입과 세출)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등기소의 설치·관리를 위한 경비

도 세출 사항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탄소세배당특별회계의 세출에도 운영 경비를 명시할 필요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함.

한편, 부칙 안 제2조는 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 탄소세배당특별회계의 설치를 위하여 「국가재정법」의 특별회계설치 근거 법률에 동 제정안을 추가하고 있음.

「국가재정법」 제4조제3항<sup>19)</sup>에 따르면 특별회계는 같은 법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제정안은 「국가재정법」을 별도로 개정하지 아니하고 제정안의 부칙으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국가재정법」은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도록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국유재산특례법」<sup>20)</sup>과는 달리 다른 법률의 부칙을 통한 개정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으나,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형식은 해당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부수적으로 다른 법률의 자구수정이나 경미한 사항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활용하여야 한다는 점<sup>21)</sup>을 고려할 때, 「국가재정

---

2. 등기업무와 관련된 경비

3. 차입금·예수금의 상환금 및 이자

3의2. 다른 회계·기금에의 전입·예탁·출연

4.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19) 「국가재정법」 제4조(회계구분) ③ 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20) 「국유재산특례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법」을 별도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제정안 원문

| 제 정 안                                                                                                                                                                                                                                                                                                                                                                                                                                                                                                                                                                                                                                                                                                |
|------------------------------------------------------------------------------------------------------------------------------------------------------------------------------------------------------------------------------------------------------------------------------------------------------------------------------------------------------------------------------------------------------------------------------------------------------------------------------------------------------------------------------------------------------------------------------------------------------------------------------------------------------------------------------------------------------|
| <p>제4장 탄소세배당특별회계</p> <p><b>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관리)</b> 탄소세배당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p> <p><b>제14조(세입)</b>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제16조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li><li>2. 그 밖의 수입금</li></ol> <p><b>제15조(세출)</b> 특별회계는 탄소세배당의 지급으로 인한 지출을 세출로 한다.</p> <p><b>제1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b> 정부는 「탄소세법」에 따른 탄소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특별회계에 전입한다.</p> <p><b>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b>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p> <p><b>제18조(잉여금의 처리)</b>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p> <p>부 칙</p> <p><b>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b>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별표 1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24.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p> |

21)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2024. 5), p154.

## 마. 보칙·벌칙(안 제5장·제6장) 및 부칙 제1조

| 제 정 안                                                                                                                                                                                                                                                                                                                                                                                                                                             |
|---------------------------------------------------------------------------------------------------------------------------------------------------------------------------------------------------------------------------------------------------------------------------------------------------------------------------------------------------------------------------------------------------------------------------------------------------|
| <p>○ 보 칙(안 제19조 및 제20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소세배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li> <li>- 기재부장관은 권한의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위임·위탁 가능</li> </ul> <p>○ 벌 칙(안 제21조 및 제2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 수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li> <li>- 자료 미제출·허위제출 등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li> </ul> <p>○ 부 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li> <li>- 타법개정: 「국가재정법」 별표 1에 「탄소세의 배당에 관한 법률」 신설</li> </ul> |

안 제5장(안 제19조 및 제20조)은 보칙으로 탄소세배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과 이 법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의 권한 등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다만, 제정안은 유사 입법례<sup>22)</sup>와는 달리 수급권과 탄소세배당 환수의 시효에 관하여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 경우 「국가재정법」<sup>23)</sup>의 소멸시효를 적용받게 되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소멸시효를 달리 두어야 할 필요는 없는지와 명확성을 위하여 수급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22) 「아동수당법」 제20조(시효) 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23)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안 제21조와 제22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세배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등을 미제출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유사 입법례<sup>24)</sup>에 비추어 적절한 수준으로 보임.

부칙 안 제1조는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대해서는 탄소세 세수 규모 및 탄소세배당 지급 규모 산정, 탄소세배당 지급시기 확정, 탄소세배당특별회계의 설치·운영 및 회계연도 개시 시기 등 향후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데 소요되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시행일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또한, 안 제10조의 탄소세배당의 지급정지의 적용에 대한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적용시기를 명확히 하는 방안<sup>25)</sup>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법률의 시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법

---

24) 「아동수당법」 제24조(벌칙)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5) 「아동수당법」 부칙 제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당시 국외에 체류 중인 아동의 경우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시행 전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는 없는지 고려할 필요가 있음.<sup>26)</sup>

---

26) 「기초연금법」 부칙 제3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0조제1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의 신청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른 동의 서면을 기초연금 수급희망자와 그 배우자로 하여금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 법 시행의 준비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12조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기초연금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결정 및 지급 등 제도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한다.

※ 제정안 원문

| 제 정 안                                                                                                                                                                                                                                                                                                                                                                                                                                                                                                                                                                                                                    |
|--------------------------------------------------------------------------------------------------------------------------------------------------------------------------------------------------------------------------------------------------------------------------------------------------------------------------------------------------------------------------------------------------------------------------------------------------------------------------------------------------------------------------------------------------------------------------------------------------------------------------|
| <p>제5장 보칙</p> <p>제19조(탄소세배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탄소세배당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세배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p> <p>제20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6장 벌칙</p> <p>제21조(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탄소세배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p>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

문 의 처

02)6788-5151